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말산업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및 말의 복지 증진〉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19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경마의 공정한 시행 등 마사회 책무 규정 ..... | 3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 3  |
| 1) 농림축산식품부 .....                | 3  |
| 2) 한국마사회 .....                  | 3  |
| 나. 검토의견 .....                   | 5  |
| 2. 말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 확대 .....        | 12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 14 |
| 1) 농림축산식품부 .....                | 14 |
| 2) 한국마사회 .....                  | 15 |
| 3)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            | 16 |

|                                                      |    |
|------------------------------------------------------|----|
| 나. 검토의견 .....                                        | 16 |
| 1)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br>근로환경 조성 추가 ..... | 18 |
| 2)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 .....                         | 20 |
| 3)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구체화 .....                         | 24 |
| 3.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 추가 .....               | 26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 29 |
| 1) 농림축산식품부 .....                                     | 29 |
| 2) 한국마사회 .....                                       | 30 |
| 나. 검토의견 .....                                        | 32 |
| 4. 경마관계자의 비위행위 인지 신고 의무 신설 및 과태료 상한 상향               | 33 |
| 가.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 36 |
| 1) 농림축산식품부 .....                                     | 36 |
| 2) 한국마사회 .....                                       | 36 |
| 3)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                                 | 37 |
| 나. 검토의견 .....                                        | 38 |
| 1) 경마관계자의 불법경마 및 비위행위 인지 신고 의무 신설 ·                  | 38 |
| 2) 마사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                     | 4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 17.
3. 회 부 일 : 2025. 1. 2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과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마사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 마주·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 다.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보호 시설 설치를 포함한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6호 신설).
- 라.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 마.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

### Ⅲ. 검토의견

#### 1. 경매의 공정한 시행 등 마사회 책무 규정

개정안은 마사회가 ① 경매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속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조의2(마사회의 책무) ① 마사회는 경매시행의 주체로서 <u>경매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br>② 마사회는 지속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u>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을 통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책무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 2) 한국마사회

책무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령에 이미 구체화되어 있다는 의견임.

① 「한국마사회법」은 동 법의 목적에서 공정한 경마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제47조)을 두고 있음.

② 사행성 조장 예방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확인·지도 등 사행성 조장 예방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③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 관련 연구 등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2012년 7월 16일부터 동법 제9조에 따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말산업 관련 연구 등을 수행 중임.

### [ 개정안의 책무 관련 현행 법률 ]

|                             |                                                                                                                                                                                                                                                                                                                               |
|-----------------------------|-------------------------------------------------------------------------------------------------------------------------------------------------------------------------------------------------------------------------------------------------------------------------------------------------------------------------------|
| <p>① 경마의<br/>공정한<br/>시행</p> | <p>「한국마사회법」<br/>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u>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br/>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u>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
| <p>② 사행성<br/>조장 예방</p>      | <p>「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br/>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u>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u>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br/>3. <u>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br/>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p> |

|                           |                                                                                                                                                                                                                                                                                                                                                                                                 |
|---------------------------|-------------------------------------------------------------------------------------------------------------------------------------------------------------------------------------------------------------------------------------------------------------------------------------------------------------------------------------------------------------------------------------------------|
|                           | <p>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4. <u>사행산업사업자<sup>1)</sup>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u></p>                                                                                                                                                                                                                                         |
| ③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 촉진 | <p>「말산업육성법」</p>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4.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p> <p>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p> <p>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p> |

## 나. 검토의견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sup>2)</sup>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 2)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8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그러나 2024년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의 확대, 도박 중독 예방·치유 사업 부족, 자율발매기 구매상한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등<sup>3)</sup>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마사회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촉구됨.

이에 개정안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 사행성 조장 예방,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촉진에 대한 마사회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책임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을 통해 선언적·유도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입법례는 다수 있음.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

3)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각 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2조의2제1항 중 “경마의 공정한 시행”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제1조)에 해당하는바,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개별법상 “국가 등의 책무” 규정과 달리, 공공기관 설립법의 경우 목적 조항이 기관 업무의 방향성을 명시함에 따라 별도의 책무 규정을 두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 공공기관 설립법의 목적 규정 ]

|         |                                                                                                                                 |
|---------|---------------------------------------------------------------------------------------------------------------------------------|
| 한국마사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u>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u>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전력공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u>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u> 을 기함으로써 <u>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u>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연구재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u>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u> 등을 보다 <u>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u>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둘째, 개정안 제2조의2제1항 중 “사행성 조장 예방”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사행성 억제 시책을 시행할 의무를 현행 사업 규정4)에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① 전자마권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6조의6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sup>5)</sup>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sup>6)</sup> ③ 마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행성 조장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 4)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각목 생략)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각목 생략)
  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
  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유희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5)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 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 13. (생략)
-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사행성 조장 예방 관련 마사회 사업 현황 ]

### ① 영업장 관리강화

- 전사 건전운영 협력체계 기반 각 사업장별 현장 점검 및 조치
- 이용자 접점근무자 현장 계도 이행력 제고 위한 「건전운영매뉴얼」제작  
\* 주요내용) 구매상한 위반 관련 상시홍보→집중계도→위반자 조치의 3단계 가이드라인 정립
- 매 경마일 접점근무자 조회 시 구매상한 계도 등 질서유지 교육 실시
- 분기별 사감위 합동점검을 통한 현장모니터링 및 월별 사감위 지도감독 조치결과에 대한 사감위-사업자 개선 회의

### ② 이용자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 계도요원 층별 1명 이상 고정배치 및 육성과 홍보물품(어깨띠, 피켓, 조끼 등)을 활용한 구매상한 준수·기초질서 등 건전이용 캠페인 실시
- 객장 내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매체(현수막·리플릿·포스터 등) 제작·비치, 경마방송·유튜브, SNS를 통한 건전구매·건전이용 안내

### ③ 실명 구매 활성화 정책 강화

- 실명구매 프로모션 강화로 오프라인에서 실명기반 구매로 이용전환 유도

### ④ 이용자 도박문제 예방교육·기초상담을 위한 전 사업장 유캔센터 운영

- 예방치유원 합동 예방 캠페인 및 신규·기존 이용자 대상 과몰입 예방 교육 시행
- 과몰입 우려 이용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힐링승마, 산림치유 등)운영, 자체 심화상담 및 예방치유원 상담 의뢰 연계 등

### < 2025년 사행성 조장 예방 관련 사업예산 >

| 구 분           | 금 액    |
|---------------|--------|
| 건전화 홍보·점검 등   | 12.5억원 |
| 이용자 도박문제 예방 등 | 48.6억원 |
| 총 계           | 61.1억원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2025. 4. 14.) 재구성

셋째, 개정안 제2조의2제2항 중 지속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의 경우,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마사회의 다양한 법률상 업무<sup>7)</sup> 중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만

을 특별히 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3년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연구·개발 강화(7.2%) 외에 말 수요확충 및 승마 대중화(26.5%), 기반 시설 확충(19.9%), 말 유통체계 구축(10.6%)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음.

### [ 말산업의 발전(법 제36조제2호) 관련 마사회 사업 현황 ]

| 각목                         | 사업명               | 예산    | 사업내용                                                   | 비고 |
|----------------------------|-------------------|-------|--------------------------------------------------------|----|
|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 경주마 생산·육성 지원제도 운영 | 4,307 | - 경주마 생산·육성 정책 수립<br>- 씨수말 도입·선발·도태 등<br>-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 | 자체 |
|                            | 내륙지역 말 생산육성 지원    | 2,845 |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br>- 목장·육성시설 운영·지원<br>- 승용마 생산·육성 지원     | 자체 |
|                            | 제주지역 말 생산육성 지원    | 7,954 |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br>- 목장·육성시설 운영·지원<br>- 씨수말 운영 및 관리      | 자체 |
|                            | 해외종축개발사업          | 1,852 | - 해외후보종축 선발·운영<br>- 말 개량 연구 및 기술 산업화                   | 자체 |
|                            | 승용마 개량 및 유통 지원    | 621   | - 승용마 개량지원<br>- 승용마 품평회<br>- 생산농가 역량 강화 교육             | 국비 |

7)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 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 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장려
- 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
- 라. 승마의 보급
- 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 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 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국제회의 등의 개최
- 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각목                                        | 사업명               | 예산    | 사업내용                                                              | 비고 |
|-------------------------------------------|-------------------|-------|-------------------------------------------------------------------|----|
| 말의<br>이용촉진<br>및<br>지도·장려                  | 승마 대중화 지원         | 704   | - 승마대중화 계획 수립·시행<br>- 승용마 생산·육성 정책 수립<br>- 재활·힐링승마 운영·강습          | 자체 |
|                                           | 말산업 기반 강화         | 653   | - 말산업 연구 및 실태조사<br>- 말산업 컨설팅                                      | 국비 |
|                                           | 말 복지 증진           | 960   | - 경주퇴역마 지원사업<br>- 말 등록 및 이력관리                                     | 국비 |
| 말의 방역<br>및 보건·<br>위생                      | 말 보건·<br>위생 관리    | 1,460 | - 동물병원 운영 및 관리<br>- 경마수의·장제 인력양성 및 기술<br>개발 지원<br>- 말 방역·검역·백신 지원 | 자체 |
| 승마의<br>보급                                 | 승마 보급<br>및 전파     | 5,315 | - 마사회 자체 대회 운영<br>- 승마선수단 운영<br>- 승마체험·기술 향상 및 보급                 | 자체 |
|                                           | 민간 승마대회<br>지원     | 1,200 | - 전국·지역 민간 승마대회 운영<br>및 지원                                        | 국비 |
|                                           | 기승능력인증제<br>운영·관리  | 350   | -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 국비 |
| 말산업의<br>국제 교류 및<br>해외시장<br>개척             | 국산 승용마<br>수출 지원   | 49    | - 국산 승용마 수출 홍보 및 수출<br>인프라수송비 지원                                  | 자체 |
| 말산업과<br>관련한<br>전시회<br>국제회의<br>등의 개최       | 말산업 박람회<br>운영     | 60    | - 농업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말산<br>업홍보관 운영                                     | 자체 |
|                                           |                   | 40    |                                                                   | 국비 |
| 말산업<br>전문인력<br>양성기관에<br>대한 지원             | 말산업 전문인력<br>양성    | 952   | - 말산업 양성기관 역량 강화<br>- 말산업 취업지원 활성화                                | 국비 |
|                                           | 말산업 전문<br>자격제도 운영 | 465   | - 국가 자격시험 운영·관리<br>- 국가자격 보수교육 시행                                 | 국비 |
| 말의<br>모형·형상<br>콘텐츠<br>또는<br>서비스의<br>제작·이용 | -                 | -     | -                                                                 | -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4.)

## 2. 말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 확대

개정안은 ①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범위에 말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②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며, ③ 위원회 위원으로 말관리사의 대표자와 동물복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6. ~ 9. (생략)                                                                                    | 제2조(정의) -----<br>-----.<br>1. ~ 5. (현행과 같음)<br>5의2. “말관리사”란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br>6. ~ 9.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br>1. 21세 미만인 사람<br>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제6조의4(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br><br>② -----<br>-----<br>-----.<br>1. ~ 3.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p>3. 마사회의 임직원</p> <p>4. <u>조교사·기수·말관리사(조교사를보조하여경주마의관리등의업무를하는 사람을말한다.이하 같다)</u></p> <p>5.·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마사회에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p> <p><u>&lt;신설&gt;</u></p> <p>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u>&lt;후단 신설&gt;</u></p> | <p>4. <u>조교사·기수·말관리사</u></p> <p>5.·6.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① -----발전과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p> <p>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p> <p>2.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p> <p>3. 말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br/>-----<br/>----- 이 경우 제3호에</p> |

| 현행                                                                                                                                                                                                                                        | 개정안                                                                                                                                                                                                                                              |
|-------------------------------------------------------------------------------------------------------------------------------------------------------------------------------------------------------------------------------------------|--------------------------------------------------------------------------------------------------------------------------------------------------------------------------------------------------------------------------------------------------|
| <p>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p> <p>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p> <p>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u>조교사·기수</u>의 대표자</p> <p>4. 말 생산자의 대표자</p> <p><u>&lt;신설&gt;</u></p> <p>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생략)</p> | <p><u>해당하는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3. -----<u>조교사·기수·말관리사</u>-----</p> <p>4. (현행과 같음)</p> <p>5.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u>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말관리사 위상 제고, 말복지 강화 등을 위해 기존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내용에 동의함.

다만,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심의”를 “자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마사회

마사회는 전체 경마 및 말산업 종사자 중 일부의 사용자에 불과하여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수행은 실효성이 부족함.

말산업발전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주요 경영사항의 심의기구인 이사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안건의 성격에 맞게 마사회의 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현재 말복지 분야에 특화된 자문기구인 “말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중으로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에 동물복지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 [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개요 ]

- ☐ 운영 근거 :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운영규정」
- ☐ 운영 목적 : 말복지 정책에 관한 자문
- ☐ 개최 내역(총 5회)
  - (1차) '19. 9월 / (2차) '20. 12월 / (3차) '21. 11월 / (4차) '22. 11월 / (5차) '23. 10월 / (6차) '24. 10월
- ☐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장 :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
  - 위 원 : 총 12명
    - 반려동물보건과 교수, 마주협회 부회장, 경마기수협회 부회장, 경마장조교사협회 부회장, 경주마생산자협회 부회장 등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 3)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말관리사는 경주마의 건강, 복지, 경마의 공정한 운영 등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위원회 위원 자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말관리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검토의견

말산업발전위원회는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마사회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임.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 있는 공무원, 「말산업육성법」 제10조8)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마주·조교사·기수의 대표자, 말 생산자의 대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개요 ]

##### □ 개최 내역(총 3회)

- (1차) '16. 11월(대면) / (2차) '17. 5월(대면) / (3차) '22. 10월(대면)
- 이후 개최실적 없음

| 구분   | 회의개최 내용                                                 |
|------|---------------------------------------------------------|
| 2016 | - (발족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경영현안 보고                          |
| 2017 | - 한국마사회 주요현안 포함 업무보고<br>- 신설 불법경마단속본부 업무추진계획            |
| 2022 | - 한국마사회 일반현황 보고<br>-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이행계획 보고 |
| 계    | -                                                       |

8)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원 구성 현황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총 15명(당연직 6명, 임명직 9명), 임기 2년

- 당연직

| 구 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비 고          |
|-----|------|--------------|--------------|
| 1   | 정 아름 |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 정부 대표        |
| 2   | 조 용학 | ·서울마주협회장     | 마주 대표        |
| 3   | 서 범석 |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장 | 조교사 대표       |
| 4   | 신 형철 | ·한국경마기수협회장   | 기수 대표        |
| 5   | 김 창만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 생산자 대표       |
| 6   | 박 준호 |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표 |

- 임명직

| 구 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1   | 김 한호 | ·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br>·現 농식품부 통상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 2   | 박 영재 | ·現 전주기전대 말산업스포츠재활과 교수<br>·現 박영재 동물병원 원장   |
| 3   | 윤 민중 | ·現 경북대 말/특수동물학과 교수                        |
| 4   | 이 학범 | ·現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br>·現 데일리벳(수의사 신문) 대표   |
| 5   | 이 승호 | ·現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br>·前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
| 6   | 박 종률 | ·現 언론중재위원회 위원<br>·前 한국기자협회 회장             |
| 7   | 정 도진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br>·前 기재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   |
| 8   | 임 효창 | ·現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br>·前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 9   | 황 혜신 | ·現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br>·前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

※ 기존 위원 임기가 '24. 10월 종료된 이후, 신규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4.)

# 1)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추가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기관으로, 주요 경마 관련 종사자로는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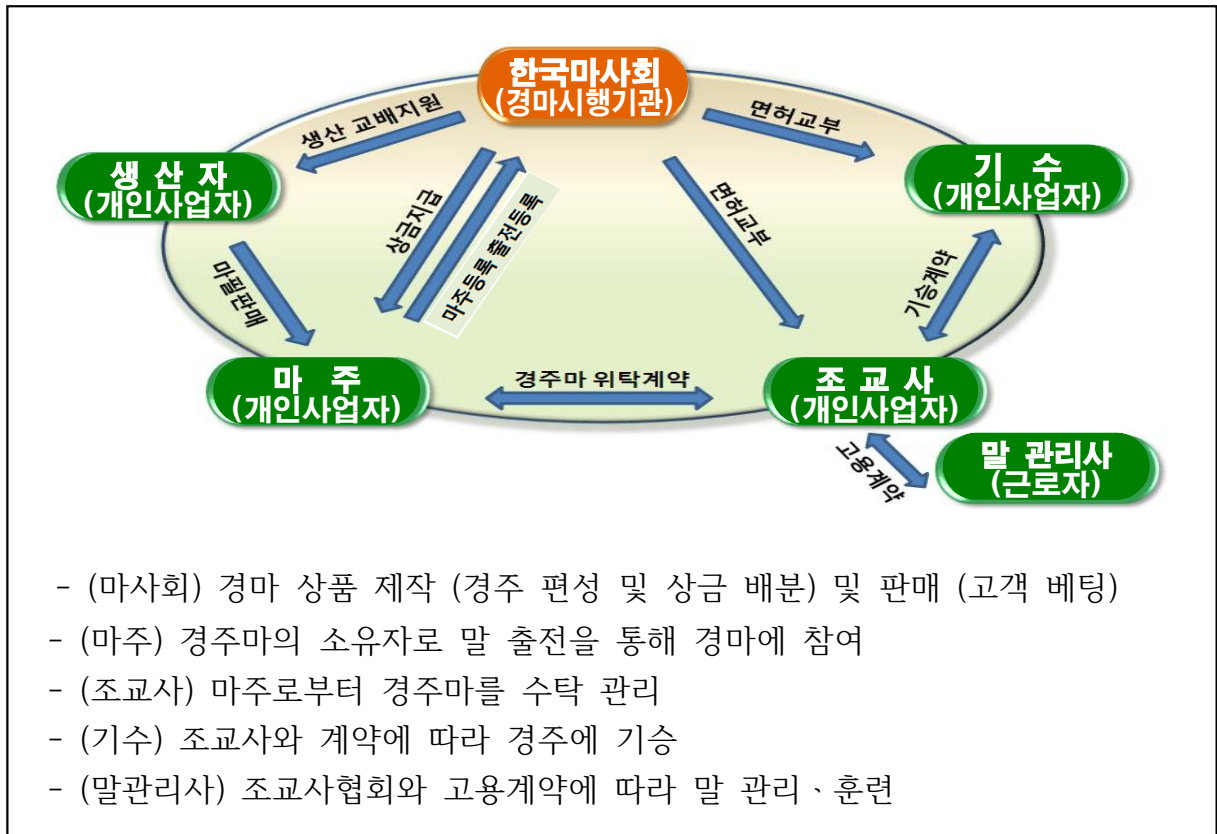
## [ 경마 관련 종사자 현황 ]

( '25. 1. 31.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마 주   | 조교사 | 기 수 | 말관리사 | 계     |
|-----|-------|-----|-----|------|-------|
| 서 울 | 476   | 42  | 51  | 457  | 1,026 |
| 부 경 | 380   | 29  | 31  | 260  | 700   |
| 제 주 | 181   | 19  | 25  | 98   | 323   |
| 계   | 1,037 | 90  | 107 | 815  | 2,049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 [ 경마 관련 종사자 관계도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그 밖에 마사회 임직원과 경마 외 분야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2024년 기준 말산업 관련 종사자는 14,225명임.

### [ 2024년 말산업 종사자수 ]

| 구 분   |         | 종사자 수(명) |
|-------|---------|----------|
| 경마분야  | 한국마사회   | 6,244    |
|       | 경마마필관계자 | 2,147    |
| 경마외분야 |         | 5,834    |
| 총 계   |         | 14,225   |

※ 자료: 2024년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 p. 40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말관리사”의 경우, 2017년 말관리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말관리사와 조교사의 개별고용체계가 조교사협회와의 고용체제로 전환된 바 있음.

### [ 말관리사 고용체계 개선 경과 ]

| 연 도   | 경 과                                                                                                                                                                                                                                           |
|-------|-----------------------------------------------------------------------------------------------------------------------------------------------------------------------------------------------------------------------------------------------|
| 2005년 | ○부경경마장 개장 이후 조교사의 말관리사 개별고용체계 운영                                                                                                                                                                                                              |
| 2017년 | ○관리사(2명) 사망사고 이후, 말관리사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출범('17. 9월)<br>- 말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부경·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 고용으로 전환 논의<br>*서울은 '93년부터 조교사협회 고용체계 운영 중<br>- 부경·제주조교사협회 설립 및 단체고용 추진으로 서울과 같이 조교사협회 고용으로 결론 도출 (관리사 고용구조 개선방안 협약서, 17.12월) |
| 2018년 | ○농식품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부경·제주조교사협회 출범                                                                                                                                                                                                           |
| 2025년 | ○부경경마장 조교사 22명 및 말관리사 207명 가입, 조교사 7명 및 말관리사 58명 미가입<br>- 마사회는 모든 조교사의 조교사협회 가입을 적극 권장·독려하고 있으나, 노조·협회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 강제할 수는 없음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4.)

개정안은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범위에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고용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6151호)」이 발의되었는데(2023. 12. 29.),<sup>9)</sup> 당시 제안이유는 “특히,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말산업 종사자의 개별 계약 위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는 말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힘.

현행법상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및 마주·조교사·기수의 대표자가 포함되고, 개정안에 따르면 말관리사의 대표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관련하여서도 마사회 필요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문위원회<sup>10)</sup>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성격에 따라 ① 의결위원회, ② 심의·조정위원회, ③ 순수자문위원회로 구분됨.

9)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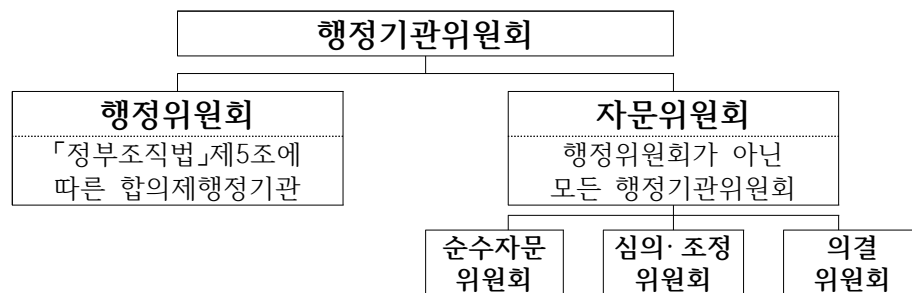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의·조정위원회와 순수자문위원회는 그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적 절차인 반면, 순수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자문이 있을 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sup>11)</sup>

### [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

#### □ 행정기관위원회의 분류

- 「행정기관위원회법」상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 자문위원회는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법 제5조)
- 자문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성격에 따라 순수자문, 심의·조정, 의결위원회로 구분(위원회 명칭은 심의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 사용)



#### □ 자문위원회의 기능별 분류 \* 「정부조직관리실무」 등 참고

| 구분       | 기능 | 행정기관 기속 여부 |
|----------|----|------------|
| 순수자문위원회  | 자문 | 불기속        |
| 심의·조정위원회 | 심의 | 불기속        |
| 의결위원회    | 의결 | 기속         |

#### ○ 심의·조정위원회

-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 의결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 ○ 자문위원회

- 행정기관에서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 의결의 형태를 띠더라도 그 결과로서 행정기관을 기속하지 못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2025. 1. 17. (일부 재가공)

11)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 296-297

개정안은 마사회가 ①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말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려는 경우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행 자문위원회 구조에서는 마사회가 경마 및 말산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sup>12)</sup> 등을 말산업발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상황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두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말산업 관련 주요 정책,” “그 밖에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당수 마사회 사업이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심의는 자문과 달리 필요적 절차이므로 말산업발전위원회를

---

12) 「말산업발전위원회규정(한국마사회규정)」 제4조의2(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마 및 말산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경마 및 말산업 문화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마 및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업무 중 그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 [ 공공기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입법례 ]

| 한국석유공사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 <p>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u>평가위원회의 심의</u>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u></li> <li>2.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u>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u></li> </ol> <p>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p> <p>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법 제26조(업무)</b>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 <u>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투자</u></li> </ul> </li> </ol> <p><b>시행령 제20조의2(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u>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u>기본계획 및 방침</u>에 관한 사항</li> <li>2. <u>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u>에 관한 사항</li> <li>3. 국외투자등의 <u>타당성 및 건별 한도 설정</u>에 관한 사항</li> <li>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u>회사와의 계약</u>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

### 3)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구체화

개정안은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말관리사의 대표자”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

첫째, 현재 말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sup>13)</sup> 및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규정」에 따라 마주·조교사·기수의 대표자를 각각 포함하고 있으나,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경마 관련 종사자(2,049명) 중 말관리사(815명)가 차지하는 비중 및 말관리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말관리사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자문 또는 심의 범위에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임.

둘째, 동물복지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고(제36조제14호), 개정안에 따르면 “말의 복지(보호시설 포함)를 위한 사업”이 추가됨.

---

13)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② 말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경마 및 말산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의 관계 공무원

2.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의 대표자**

4. 말 생산자의 대표자

5. 그 밖에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재 마사회는 말복지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복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현재도 동물복지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직원 중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동물복지에 전문성이 없는 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각 호<sup>14)</sup>의 자격과 한국마사회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sup>15)</sup>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4)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15)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 운영규정 ]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한국마사회 말산업·경마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말복지·심판·수의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수의사법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수의사법 제2조제1호)
  2.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복지·보호를 담당하는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말산업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6. 말산업 유관단체를 대표하며 2년 이상 말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4.)

### 3.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 추가

개정안은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복지(보호시설 설치 포함)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36조(사업의 범위) -----<br>-----<br>-----. |
| 1.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 1. ~ 15. (현행과 같음)                     |
| 가. 경마의 개최                                              |                                       |
| 나. 말·마주 및 복색의 등록                                       |                                       |
| 다. 조교사·기수의 면허 및 장                                      |                                       |

| 현행                                                                                                                                                                                                                                                                                                                                                                                                                                                                              | 개정안 |
|---------------------------------------------------------------------------------------------------------------------------------------------------------------------------------------------------------------------------------------------------------------------------------------------------------------------------------------------------------------------------------------------------------------------------------------------------------------------------------|-----|
| 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br>라. 기수의 양성과 훈련<br>2.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br>가. 말의 생산·개량증식·육성<br>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br>나. 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br>장려<br>다. 말의 방역 및 보건·위생<br>라. 승마의 보급<br>마.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br>외시장개척<br>바. 말의 모형·형상·영상 등<br>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br>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br>·이용<br>사. 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br>국제회의 등의 개최<br>아. 「말산업 육성법」 제10조<br>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br>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br>3.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br>산발전기금에 출연<br>4. 경마장 내 놀이·운동·휴양·<br>공연·전시설의 설치·운영<br>5. 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br>유사한 사업<br>6.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     |

| 현행                                                                                                                                                                                                                                                                                                                                                                                                                                                                             | 개정안 |
|--------------------------------------------------------------------------------------------------------------------------------------------------------------------------------------------------------------------------------------------------------------------------------------------------------------------------------------------------------------------------------------------------------------------------------------------------------------------------------|-----|
| <p>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7.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8.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판매·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p> <p>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출연 및 보조</p> <p>10. 제1호가목·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p> <p>11. 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p> <p>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p> <p>13. 유희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 시설의 설치·운영</p> |     |

| 현행                                                                                                                                      | 개정안                                                                |
|-----------------------------------------------------------------------------------------------------------------------------------------|--------------------------------------------------------------------|
| 14.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br>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br><u>&lt;신설&gt;</u><br><u>16.</u>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u>16.</u> 말의 복지(보호시설 설치를 포함한다)를 위한 사업<br><u>17.</u> (현행 제16호와 같음)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마사회에서 자체 자금 및 국비 예산을 통해 다양한 말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마사회 사업 범위에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말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16호를 제15호로 하고,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딸린 사업의 범위에 안 제15호를 반영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

## 2) 한국마사회

2022년 12월 퇴역 경주마 등 말복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이후 말복지관련 전담부서(말복지부)를 통해 복지기금 조성과 이를 활용한 승용마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임.

### [ 한국마사회 말복지사업 현황 ]

#### □ 더러브렛 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실적

- 기금 개요: 경주퇴역마 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년부터 마사회, 경마관계자가 공동으로 조성
- 마사회·마주가 1:1 매칭으로 매년 20억원씩 5년간('23.~'27.)간 100억원 조성 예정('22. 12월 마주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단위 : 천원)

|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계         |
|------|--------|---------|---------|-----------|-----------|-----------|
| 조성금액 | 60,208 | 154,044 | 732,536 | 1,928,804 | 2,028,572 | 4,904,164 |
| 집행금액 | 26,510 | 27,570  | 217,063 | 926,265   | 1,696,117 | 2,893,525 |

#### □ 2024년 말 복지사업 주요 추진실적

| 구 분                | 사업명(주요내용)                                          | 실적                                 |
|--------------------|----------------------------------------------------|------------------------------------|
| 생애주기별<br>말복지<br>사업 | ① 망아지 각인순치 지원<br>•사람접촉 늘려 친화성 높이고, 말 스트레스·안전사고 저감  | •(신규)망아지 59두 순차완료                  |
|                    | ② 부상경주마 재활지원<br>•부상경주마 활용기간 증대 /은퇴 후 건강한 승용마로 전환   | •('23) 50두 → ('24) 58두             |
|                    | ③ 퇴역경주마 승용전환 지원<br>•퇴역경주마를 승용마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 지원      | •('23) 68두 → ('24) 100두            |
|                    | ④ 퇴역경주마 한정 승마대회<br>•퇴역경주마 승용마 활용 촉진 /은퇴 후 활용방안 다양화 | •(신규) 2회 대회 개최                     |
| 말복지<br>사각지대<br>예방  | ⑤ 말복지 컨설팅 지원<br>•말 복지 취약시설 말복지 컨설팅                 | •('23) 11개소 → ('24) 53개소           |
|                    | ⑥ 학대 말 긴급구호체계<br>•지자체-마사회 협력체계 구축 /동물학대 말 구조·입양    | •(5개 지자체) 말산업특구 <sup>16)</sup> +충남 |
|                    | ⑦ 말복지 인증제 도입<br>•자별적 말복지 실천을 위한 인증제/시범도입 후 확대      | •(신규) 2개소 시범도입                     |

| 구 분       | 사업명(주요내용)                                           | 실적                    |
|-----------|-----------------------------------------------------|-----------------------|
| 말복지 인식 개선 | ⑧ 말복지 교육 의무화<br>•말산업 자원사업 참여자 의무이수 / 교육사이트 구축 완료    | •(신규) 525명 이수 ('24.7) |
|           | 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br>•우수경주마 예우 및 관광자원화('24.11. 방문자 50만명) | •경주마 5두, 휴양목장 2개      |
|           | ⑩ 말복지 홍보 사업<br>•말복지 홈페이지 구축 / 박람회, 승마대회 등 행사 중 홍보   | •(신규) 홈페이지 구축 완료      |

□ 2025년 말 복지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24년 추진사업(상기 10종) 외, 말복지 사업 추가 발굴 및 사업 확장을 통해 말복지 인식 개선 등 말 보호 강화
- 추가 사업 : 국민참여 말복지 응원사업, 말 기증·입양 플랫폼 신설, 말복지 가이드라인 확충, 망아지 각인순치 성과 추적연구 등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보호시설 설치의 경우 동물보호시설 설치·운영 등 책무는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수행 중으로, 마사회는 지자체(경기, 충남 등)와 협력하여 말복지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생략)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6) 말산업특구 : 제주, 경기, 경북, 전북(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 나. 검토의견

말산업정보포털(호스피아, horsepia.com)<sup>17)</sup>에 따르면 매년 1,300두 가량의 퇴역 경주마 가운데 300두 이상이 폐사되거나 용도미정으로 분류됨. 특히, 2024년 10월 공주시 퇴역 경주마 목장에서는 말 관리 소홀로 다수의 말 사체가 발견되는 등 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드러나, 퇴역경주마, 피학대 말 등이 머물 수 있는 말 보호시설 조성 등 실질적인 말복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sup>18)</sup>

### [ 연도별 경주마 퇴역 현황 ]

| 퇴역 연도 | 퇴역 건수 | 최종용도 |     |      |                |     |
|-------|-------|------|-----|------|----------------|-----|
|       |       | 승용   | 번식용 | 용도미정 | 기타(관상용, 교육용 등) | 폐사  |
| 2025  | 357   | 174  | 75  | -    | 45             | 51  |
| 2024  | 1,226 | 521  | 194 | 19   | 182            | 305 |
| 2023  | 1,270 | 413  | 210 | 19   | 282            | 345 |
| 2022  | 1,326 | 286  | 161 | 23   | 286            | 570 |
| 2021  | 1,615 | 297  | 151 | 70   | 128            | 969 |

※ 자료: 말산업정보포털, 경주마 퇴역통계, <<https://www.horsepia.com/hp/pa/ss/PASS2060/index.do>>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의 사업에 말의 복지<sup>19)</sup>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마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말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17) 말산업정보포털, 경주마 퇴역통계, <<https://www.horsepia.com/hp/pa/ss/PASS2060/index.do?>>

18) “말 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좌담회-공주시 동물학대 현장 구조 말 입양 현황과 말 복지 정책 중심으로”, 문대림 국회의원실(2025. 2. 20.)

19) 한국마사회 「말 복지 가이드라인」은 “말의 복지란 말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며, 양호한 영양상태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을 나타낼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현재 말 보호센터(시설)는 없다는 점에서 보호시설 설치를 명시함으로 해당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마사회에서는 마사회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지자체에서 운영·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지원(비용 지원, 컨설팅, 교육 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므로, 마사회의 직접 수행이 어렵다면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보호시설 현황 ]

| 구분    | 동물보호센터 | 민간동물보호시설 |
|-------|--------|----------|
| 2023년 | 228개소  | 147개소    |

※ 주1) 동물보호센터: 지자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주2) 민간동물보호시설: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신고한 시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25. 4. 17.) 제출

#### 4. 경마관계자의 비위행위 인지 신고 의무 신설 및 과태료 상한 상향

개정안은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가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를 시행할 의무와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마사회가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 7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u>제47조의2(조교사·기수·말관리사 등의 의무)</u>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를 시행하여야 하고,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
| <p>제61조(과태료) <u>&lt;신설&gt;</u></p>                                                                           | <p>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li> <li>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li> <li>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li> </ol> |
|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p> | <p>② -----<br/>-----<u>300만원</u>-----<br/>-----<u>제4호부터</u>-----<br/>-----</p>                                                                                                                                                                                                                  |

| 현행                                                                                                                                                                                                                                                                                                                                                                                                                                                     | 개정안                                                                                                                                                                       |
|--------------------------------------------------------------------------------------------------------------------------------------------------------------------------------------------------------------------------------------------------------------------------------------------------------------------------------------------------------------------------------------------------------------------------------------------------------|---------------------------------------------------------------------------------------------------------------------------------------------------------------------------|
| <p>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p> <p>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p> <p>2.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3.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4. 제6조의2제2항·제6조의3제3항·제40조·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5.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p> <p>6.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p> <p>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lt;신설&gt;</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p> | <p>-----.</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4. ~ 7. (현행과 같음)</p> <p>8. 제47조의2를 위반하여 불법 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경마관계자의 법규 준수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금액 상향에 동의함.

### 2) 한국마사회

“불법경마나 비위행위”, “인지한 경우”의 의미와 신고 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한국마사회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침」 및 「경마시행규정」에 경마비위 등에 대한 임직원의 신고 의무와 경마부정행위에 대한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사실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건의함.

## [ 경마비위 신고의무 관련 마사회 내부규정 ]

### 「한국마사회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신고센터나 (생략) 어느 하나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마사회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침」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

**제104조(사실보고)**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경주에 관하여 부정할 청탁을 받거나 약속 등을 제의받은 경우
2.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도록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의받은 경우

**제167조(조교사의 고지의무)** ③ 조교사는 자신과 기승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경마부정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또한,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되,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의 과태료 수준을 고려할 때 300만원 이하가 적절함.

### 3) 전국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불법경마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신고 의무화 조항 및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부분의 경우, ①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정의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고,

② 불법행위 신고가 종사자의 의무로 규정된다면 밀접한 협업이 필요한 말관리사, 기수, 조교사 등 종사자들 간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재 마사회 내부에 운영 중인 불법경마 감시·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나. 검토의견

### 1) 경마관계자의 불법경마 및 비위행위 인지 신고 의무 신설

202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6조 8,898억원이었던 불법경마<sup>20)</sup> 규모가 2022년 8조 4,536억원으로 22.7%(1조 5,638억원) 증가한 반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매출액(6조 3,969억원, '22년)은 코로나-19 유행 전 매출액(7조 3,572억원, '19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 [ 불법경마 규모 증가 현황 ]

| 구 분      |       | 2019년      | 2022년      |
|----------|-------|------------|------------|
| 불법경마     | 규 모   | 6조 8,898억원 | 8조 4,536억원 |
|          | 조세포탈액 | 1조 1,024억원 | 1조 3,525억원 |
| 합법경마 매출액 |       | 7조 3,572억원 | 6조 3,969억원 |

※ 주: 조세포탈 규모는 불법경마 규모(추정)에 한국마사회 마권발매시 제세금 16%(레저세10% + 지방교육세 4% + 농어촌특별세 2%)을 감안하여 추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0. 25.)

또한, 최근에는 접근 편의성, 베팅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ICT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경마가 만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의뢰 및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의뢰 및 실적 현황 ]

|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의뢰(건) | 8,295 | 12,346 | 16,519 | 22,357 | 24,609 |
|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실적(건) | 7,505 | 10,118 | 12,177 | 15,345 | 17,498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5. 4. 17.) 제출

한편, 한국마사회는 내부지침에 따라 임직원 및 경마관계자의 부정 행위 신고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건의 경마비위 관련 신고가 있었음.

### [ 최근 5년간 경마비위 관련 신고 및 처리현황 ]

| 연도   | 신고내용                             | 처리현황                                      |
|------|----------------------------------|-------------------------------------------|
| 2024 | 기수가 마주에게 기승 예정 경주마 상태를 알려준 행위    | 이사회 자체조사 후 면허취소 등 제재처분 완료                 |
| 2022 | 말관리사가 외부인에게 경주마 상태 등을 알려주고 금품 수수 | 이사회 자체조사 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 완료, 현재 검찰수사 진행 중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4. 17.)

불법경마 및 비위행위는 경마 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말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마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경마 관계자의 경우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 관계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입법례 ]

|                      |                                                                                                                                                                                                                                                                                                                                                                                                                           |
|----------------------|---------------------------------------------------------------------------------------------------------------------------------------------------------------------------------------------------------------------------------------------------------------------------------------------------------------------------------------------------------------------------------------------------------------------------|
| 국민체육진흥법              | <p>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u>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u>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p>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u>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p> <p>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p>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p>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u>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에  
게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마를 시행하는 주체는 마사회로,<sup>21)</sup> 경마관계자에게 건전한 경마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마사회는 현행법<sup>22)</sup>에 따를 때에도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  
및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  
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등)를 할 의무가 있음.

마사회 외의 경마관계자에 대해서도 현행법 제50조 및 제51조<sup>23)</sup>에  
서 공정한 경마를 해친 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  
도로 과태료로 제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21) 제3조(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22) 법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① 마사회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  
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전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23)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둘째, 과태료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위반되는 행위와 대상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만으로는 비위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신고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준수나 제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한국마사회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경마 비위행위로 열거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 경마비위행위 ]

| 구 분                | 비위행위 유형                                                                                                                                                                                                                                                    |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4호  |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행위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5호  | 기수가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경우                                                                                                                                                                           |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6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li> <li>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li> </ul> |
|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
|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2호     |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업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2호 | 부정한 목적으로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출주시킨 경우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3호 |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모든 능력을 발휘시키지 않은 경우                                                                                                                                                                                                                           |

| 구 분                | 비위행위 유형                                                                                                           |
|--------------------|-------------------------------------------------------------------------------------------------------------------|
| 경마시행규정 제102조제1항제4호 | 경주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는 포함한다)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호    | 자격이 없는 말을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출주시키려고 한 마주 또는 조교사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2호    | 마주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린 마주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3호    | 경주마로 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제13호   | 기수에게 부당한 기승법 또는 경주 전개를 지시한 마주·조교사 및 그 지시를 이행한 기수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경주마 관계자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4호  | 출주하는 말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주마 관계자                                                                          |
|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6호  |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한 조교사·기수·조교보 및 말관리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 자료: 한국마사회 경마비위행위 신고, <<https://www.kra.co.kr/op/vm/de/il/05/opvmdeil0512.do>>

한편, 비위행위 신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가 없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임.

## 2) 마사회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의무태만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상한을 정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상응하

도록 하며, 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자와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sup>24)</sup>

개정안은 마사회가 ①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경마장 설비 변경 등 농식품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및 ③ 한국마사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마사회가 ④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사항(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재산처분, 적립금 사용 등)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손익금 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⑥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⑦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①~③은 불법경마 등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행위로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④~⑦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상한을 차등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24) 현재 1998. 5. 28. 96헌바83

[ 과태료 관련 사행산업 입법례 및 개정안 비교 ]

| 구 분                                                                                 | 경마(「한국마사회법」)        |               | 스포츠<br>도도<br>(「국민체육<br>진흥법」) | 경륜·경정<br>(「경륜·경정법」) | 소싸움<br>( <del>전통 소싸움</del><br>경기에 관한<br>법률) |
|-------------------------------------------------------------------------------------|---------------------|---------------|------------------------------|---------------------|---------------------------------------------|
|                                                                                     | 현 행                 | 개정안           |                              |                     |                                             |
| ① 마사회가 허가받지 않고 경마장 설치 시                                                             | 100만원↓<br>(§61①-1호) | <u>500만원↓</u> | -                            | 100만원↓<br>(§35①-1호) | 300만원↓<br>(§32①-1호)                         |
| ② 마사회가 경마장 설비 변경 등 농식품부의 조치명령을 위반 시                                                 | 100만원↓<br>(§61①-2호) |               | -                            | 100만원↓<br>(§35①-3호) | 300만원↓<br>(§32①-3호)                         |
| ③ 한국마사회 등 유사명칭 사용한 자                                                                | 100만원↓<br>(§61①-3호) |               | 100만원↓<br>(§55④-2호)          | -                   | -                                           |
| ④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및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 재개, 자금 운용 및 재산 처분 등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을 시 | 100만원↓<br>(§61①-4호) | <u>300만원↓</u> | 200만원↓<br>(§55③)             | 100만원↓<br>(§35①-2호) | 300만원↓<br>(§32①-2호)                         |
| ⑤ 마사회가 손익금 처리 절차 위반 시                                                               | 100만원↓<br>(§61①-5호) |               | 200만원↓<br>(§55③)             | 100만원↓<br>(§35①-2호) | 300만원↓<br>(§32①-2호)                         |
| ⑥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시                             | 100만원↓<br>(§61①-6호) |               | 100만원↓<br>(§55④-3호·4호)       | 100만원↓<br>(§35①-4호) | 300만원↓<br>(§32①-6호)                         |
| ⑦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명령 불이행 시                                                          | 100만원↓<br>(§61①-7호) |               | -                            | -                   | -                                           |
| ⑧ (신설) 불법경마나 비위행위 인지 후 미신고 시                                                        | -                   |               | -                            | -                   | -                                           |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2025. 2.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등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가 있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 농식품부 소관 법률 입법례 ]

| 법률                                | 위반내용                                                                                                                                                                                                                                                                                                                                              | 과태료<br>금액      |
|-----------------------------------|---------------------------------------------------------------------------------------------------------------------------------------------------------------------------------------------------------------------------------------------------------------------------------------------------------------------------------------------------|----------------|
| 낙농진흥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과태료)</li> <li>1. 제17조제1항(농식품부장관이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사항보고)에 따른 <b>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b></li> <li>2. 제17조제2항(농식품부장관이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에 유통질서 등 유지 명령)에 따른 <b>명령을 위반한 자</b></li> <li>3. 제17조제3항(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진흥회에 대한 필요 조치 명령)에 따른 <b>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b></li> </ul> | 500만원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0조(과태료)제2항</li> <li>1. 제53조제1항(포전매매 계약은 서면방식으로)을 위반하여 <b>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b></li> <li>2. 제74조제2항(거래질서 유지 위반단속)에 따른 <b>단속을 기피한 자</b></li> <li>3. 제79조제1항(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에 따른 <b>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b></li> </ul>                                                  | 500만원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과태료) ② 제14조(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료요구)에 따른 <b>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li> </ul>                                                                                                                                                                                                         | 500만원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조(과태료) ① 제13조(인증의 승계 등)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1항(보고·검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li> </ul>                                                                                                                             | 500만원<br>300만원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사회적 농장 지정 표시)을 위반하여 <b>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b></li> </ul>                                                                                                                                                                                                                       | 500만원          |

| 법률         | 위반내용                                                                                                                                                                                                                                                                                                                                                                                                                                                    | 과태료<br>금액 |
|------------|---------------------------------------------------------------------------------------------------------------------------------------------------------------------------------------------------------------------------------------------------------------------------------------------------------------------------------------------------------------------------------------------------------------------------------------------------------|-----------|
| 말산업<br>육성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1조(과태료)</li> <li>1. 제15조제1항 전단(승마시설 신고)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li> <li>2. 제15조제1항 후단(승마시설 변경 신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li> <li>3. 제15조제4항(승마시설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li> <li>4. 제15조제5항(승마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li> <li>5. 제15조제6항(승마시설 영업 정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营业을 한 자</li> <li>6. 제26조제2항(말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li> </ul> | 500만원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제출 (2025. 2. 28.)

또한, 「한국마사회법」 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990년 8월 1일 전부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sup>25)</sup>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대비 2025년 3배 가량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동법에 따라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음.

문 의 처

02)6788-5414

25) 「경륜·경정법」은 1992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은 1994년 개정시 도입됨.